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92

발의연월일: 2022. 7. 5.

발 의 자: 강선우·김교흥·김윤덕

맹성규・설 훈・이동주

이수진 · 임종성 · 정태호

조정식 · 최기상 · 홍정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를 두고 있음.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하여 매월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과비교하여 사후 지원 대책에 차이가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 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 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부터 32조의7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4(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에 대하여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

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5(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청소년의 범위와 해당 청소년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6(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5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의 관리
 -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평가
-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2조의7(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6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 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 지원"이라 한다) 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 구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 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일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청 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 제32조의4(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쉼터 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 에 대하여 퇴소 이후의 자립지 원, 생활 및 정서적 · 신체적 건 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
- 제32조의5(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 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 장 · 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 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 사업을 하여야 할 청소년의 범

<신 설>

위와 해당 청소년의 선정·관 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의6(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업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5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청소년의 관리
 -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발굴 및 관리
 -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 사·연구 및 평가
 -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 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 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용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의7(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6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정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정의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

할 수 있다.